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밖 불법촬영 행위 처벌 규정 마련 등〉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08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밖 불법촬영 행위 처벌 규정 마련	2
2.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촬영 행위 가중처벌	5
※ 참고자료	9
1. 군사기지 불법촬영 관련 국가별 규제 현황	9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벌칙규정	10
3. 「군사기밀 보호법」 가중처벌규정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27.
3. 회부연월일 : 2025. 5.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하여 군사보안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밖 불법촬영 행위 처벌 규정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u>안에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 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략) ② (생략)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 <u>안 또는 밖(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에서</u> -----. ----- ----- ----- -----. 1.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허가없이 촬영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 내부와 미항공모함 등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론 촬영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변화된 안보 위협 상황에 대응하여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을 작동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촬영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다만, 다음의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보호구역 밖이라는 문구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드론 사용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있음.

둘째, 현행법은 불법촬영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을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무기나 군용물품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님.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무기나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벌칙)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용물품을 포함하는 군사기밀 관련 불법촬영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국가안보나 군사기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군사시설의 위치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촬영 금지 표시가 없는 보호구역 밖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촬영을 제한하기보다는 국가안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에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촬영 행위 가중처벌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촬영하는 행위가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을 위한 것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4조의2(형의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u>

다. 검토의견

- 현행법²⁾은 관할부대장등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무단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을 위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로 인해 군사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³⁾, 이러한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의 내용은 군사기밀을 촬영하고 그 행위가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한 것일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외국이 군사기밀을 취득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 다만, 법정형을 상향함에 있어서는 불법의 정도 및 다른 벌칙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벌칙을 정하는 책임과 벌칙간의 비례성 원칙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벌칙)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3) 중국인에게 군사기밀 유출 적발 현황: 2021년 1명 / 2023년 1명 / 2024년 5명 / 2025년 1명

□ 동 법에 규정된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①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허가없이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군함의 항로 방해, 군용항공기 운항 위험, 비행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음.

□ 군사시설이나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군사시설 불법촬영행위보다 중할 수 있음에도 불법촬영행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의 균형에 맞지 않을 소지가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법정형	위반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제9조제1항제9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	허가없이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제9조제1항제11호)
	군함의 항로를 방해하는 행위(제9조제1항제6호)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 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제9조제1항제10호)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 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제10조제1항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 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제9조제1항제4호)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 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제9조제1항제5호)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은 군사시설 촬영 외에 군사시설 출입, 손괴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경미한 행위인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

※ 참고자료

1. 군사기지 불법촬영 관련 국가별 규제 현황

국 가	규 제 현 황
미 국	- 부대 지휘관의 허락 없이 필수 군사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사진, 스케치, 모사 등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U.S. CODE(The Code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공식적으로 편찬된 성문 법령집, 6년마다 전면 개정, 매년 보완하여 발행
일 본	- 기지 울타리 밖에서 촬영금지에 관한 법령은 없음 *최근 부대 밖에서 촬영도 지휘관이 금지하는 사례 있음
프랑스	- 군시설의 무단 침입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5,000유로 *형법 제413-5조 - 핵발전소, 형무소, 군기지 등 국가 주요 시설 일체 촬영 금지 / 위반시 벌금 1,500~3,000유로 *총리령 「사진기, 영화촬영기기, 기타 센서를 이용한 항공영상 촬영 금지령」('17. 1. 27.)
대 만	- 「요새보루관제구역 *」에 대한 촬영금지 *‘공격하는 쪽은 꼭 탈취해야 하고, 수비하는 쪽은 꼭 막아야 하는’ 중요한 지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벌칙규정

법정형	위반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제9조제1항제9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제9조제1항제11호)
	군함의 항로를 방해하는 행위(제9조제1항제6호)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협 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제9조제1항제10호)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 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제10조제1항제5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 취(제9조제1항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제9조제1항제4호)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 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제9조제1항제5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제9조제1항제2호)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에 위반하 여 설치된 장애물의 제거·장애물 소유자등의 퇴거 명령에 따 르지 아니한 경우(제11조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법정형	위반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제9조제1항제1호)
	② 허가없이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제9조제1항제7호)
	③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제9조제1항제8호)
	④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통신에 장애 + 통신설비·전력시설 등 건축, 공작물·매설물(제9조제1항제12호)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 제한에 위반한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제9조제2항)
	허가없이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제10조제1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에 위반하여 설치된 장애물의 제거·장애물 소유자등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1조제1항, 제10조제1항제4호)
	선박의 정박지를 변경하거나 퇴거하도록 한 관할부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으로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3항)

3. 「군사기밀 보호법」가중처벌규정

법정형		위반 행위
3년 이상 유기징역	*금품이나 이익 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 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 체포함)을 위한 경우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처벌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업무상 군사 기밀을 누설한 경우(법 제13조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10년 이하 징역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경우 (법 제11조)
7년 이하 징역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13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되고 군사기밀임을 알 면서도 이를 누설한 경우(법 제12조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법 제11조의2)